

2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 원가계산서

(단위 : 원)

구분	내용	산출기준	관련근거	
① 인건비	기본급	직접종사자의 노동력 대가	근무원원×근무기간×월 임금 근로기준법43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자 야간근로자(오후10시~오전6시)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연장근로시간×1.5 근로기준법제56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자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휴일근로시간×1.5 "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야간근로시간×0.5 "
		연차수당	1년간 8할 이상 개근한자: 15일 1년 미만 근무한자 : 1일/월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8시간×미사용일수÷12월 근로기준법제60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기타수당	호봉제에 의한 경우	"
	상여금		기본급×400% 이내	예산운용지침, 보수규정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속근로연수 1년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년	(기본급+제수당+상여금)×년30일분	근로기준법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장
	사회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사용자 부담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법 제88조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고용보험		고용보험법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료 × 공시요율
소계				
② 여비	여비(국내/국외)	국내의 여비 (관계 공무원 여비 제외)	인원*단가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교육훈련비		계약목적물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한함 (수량×단가)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
	임차료			직접 소요비용 계상
	우편통신비	우편료, 전화료, 통신료		"
	유인물비	프린트, 인쇄물, 용지비용		"
	소모품비	비품, 피복비, 각종 물품구입비		"
	차량유지비	차량연료비, 수리비		"
	수선유지비	소방안전, 물탱크청소		"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수수료 등		"
	기타경비	사업, 사업장 소요 경비		"
	소계			
③ 사업비	㉠ 공사, 용역, 물품구매 ㉡ 그 외 프로그램 교육, 행사 등	단위 사업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출내역서(기초계산서) 작성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함	
위탁비총계		(①+②+③)		

※ 사업 및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산정

□ 항목별 원가계산 요령

1) 원가계산서의 구성요소

가) 인건비 =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 사회보험료

- (1) 기본급(급여) : 법인, 사무(시설) 임·직원에 대한 기본 월 임금
- (2) 제수당 : 임·직원에 대한 제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및 기타 수당(직종·직급별 등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 (3) 상여금 : 임·직원에 대한 업무 성과나 공헌도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4) 퇴직급여충당금 :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한 충당금
- (5) 사회보험료 :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나) 운영비

- (1) 여비(국내/국외) (2) 교육훈련비 (3) 임차료 (4) 우편통신료 (5) 유인물비
- (6) 소모품비 (7) 수선유지비 (8) 차량유지비 (9) 공공요금 및 제세
- (10) 기타경비(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한함)

다) 사업비(공사, 용역, 물품구매, 프로그램, 교육, 행사 등)

라) 위탁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합계

2) 원가계산서 산정 기본원칙

가) 거래실례가격을 우선 적용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www.pps.go.kr → 가격정보)
-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 등)
- (3)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장표 등 객관적 증빙자료)

나)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각 비목 또는 품목별로 원가계산

3) 비목별 소요금액 산출기준

가) 인 건 비 : 기본급 + 법령 및 지침에 의한 임금

- (1) 기본급(급여) : 사업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직종·직급별 종사인원에 기준 급여단가를 곱하여 계산
 기본급(급여) = 직종·직급별 소요 인원수 × 근무기간(월) × 기준 급여단가

- 산출방법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근로자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과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 단가를 고려하여 결정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www.kenca.or.kr)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 최저임금:고용노동부(시간당 최저임금 고시 2019년:8,350원/시간)
 -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2019년 : 10,148원/시간당 :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

- 근로시간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시간, 근로유형별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적용

《 근무시간 산정 》 주5일 근로(1일유급휴일, 1일 무급휴일)

▶ 월평균근무시간 : 209시간

$$\Rightarrow \text{월} : \frac{48}{6} \times \frac{365-52}{12} = 208.66\text{시간} = 209\text{시간}$$

〈기본급 산출 예시〉

운영인력			근무기간 (개월)	기준단가 (월 임금)	소요금액	관련근거 (산출기준)
직종	담당과업	종사인원				
2급	센터장	1명	12	3,774,000	45,288,000	00센터 보수규정 직급, 호봉별 급여표
4급	팀장	1명	12	2,818,000	33,816,000	
5급	행정,교육	1명	12	2,563,000	30,756,000	
5급	서무	1명	12	1,956,000	23,472,000	
합계					133,332,000	

① 기준단가 : 종사원 직급(호봉)별 월 임금으로 산정

② 종사인원, 기준단가(월 임금)에 대한 규정을 비교(관련근거)란에 명시하고, 관련자료 제출

(2) 제 수 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관리자수당, 기타 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산출 예시〉

직종	근무인원	근무기간			기준단가 (시간당)	소요금액	관련근거 (산출기준)
		산출기간	일수(월)	소계			
4급	1명	12개월	10시간	120시간	24,313	2,917,600	00센터 예산편성지침 월 10시간이내
5급	1명	12개월	10시간	120시간	22,177	2,661,240	
5급	1명	12개월	10시간	120시간	17,095	2,051,400	
합계						7,630,240	

- 연장(휴일)근로수당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의 업무량을 분석하여 사전 예산운용계획 및 보수규정 등에 연장근로시간 한도 명시(정액지급 불가)
- 주 52시간 근로 이내 산출((주간40시간+12시간(연장,휴일))
- 4급 수당 산출 예
 - 통상임금(기본급+급식비+정기상여금) ÷ 월근무산출시간 × 할증 × 월연장근로시간 × 12
 =(2,818,000+100,000+5,636,000/12) ÷ 209 × 1.5 × 10 × 12 = 2,917,600

〈야간근로수당 산출 예시〉

직종	근무인원	근무기간			기준단가 (시간당)	소요금액	관련근거 (산출기준)
		산출기간	일수(월)	소계			
시설6급	2명	12개월	53시간	636시간	4,800	6,105,600	00 센터 예산편성지침
시설7급	2명	12개월	53시간	636시간	4,605	5,857,760	
합계						11,963,360	

- 야간근로수당은 22:00~06:00 근무자 적용
- 7급 수당 산출 예
 - 통상임금(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월근무 산출시간 × 할증 × 월 야간근로시간 × 12월 = 1,925,100 ÷ 209 × 0.5 × 53 × 12 = 5,857,760

〈연차수당 산출 예시〉

직종	종사인원	연차보상일 산정			기준단가 (1일당)	소요금액	관련근거 (산출기준)
		연차일수	사용일수	보상일수			
2급	1명	15	10	5	180,010	900,050	00센터 민간위탁금 운용계획서
4급	1명	15	10	5	129,670	648,350	
5급	1명	15	10	5	118,280	591,400	
5급	1명	15	10	5	91,170	455,850	
합계						2,595,650	

- 연차일수 : 1년간 8할 이상 개근한자 (15일/년)
- 4급 수당 산출 예
 - 통상임금(기본급+급식비+정기상여금) ÷ 월근무 산출시간 × 1일 근무시간 × 휴가 미사용일 (2,818,000+100,000+5,636,000/12) ÷ 209 × 8 × 5 = 648,350

〈정액급식비 산출 예시 : 월 10만원〉

직종	근무원	근무기간			기준단가 (월)	소요금액	관련근거 (산출기준)
		산출기간	일수	소계			
2급	1명	12개월			100,000	1,200,000	00센터 민간위탁금 운용계획서
4급	1명	12개월			100,000	1,200,000	
5급	1명	12개월			100,000	1,200,000	
5급	1명	12개월			100,000	1,200,000	
합계						4,800,0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예

〈가족수당 산출 예시〉

직종	산출기간	근무기간			기준단가 (월)	소요금액	관련근거 (산출기준)
		배우자	자녀	기타			
2급	12개월	40,000	20,000		60,000	720,000	00센터 민간위탁금 운용계획서
4급	12개월	40,000	40,000		80,000	960,000	
5급	12개월	40,000			40,000	480,000	
합계						2,160,0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배우자 월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 첫째자녀 월 2만원, 둘째자녀 월 6만원, 셋째자녀 월 10만원
- 당사자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주민등록표상 세대원)
 - 4급 산출 예 : 배우자1 + 자녀2 = (40,000 + 20000 + 20000) × 12 = 960,000

〈관리자 수당 산출 예시〉

지급대상	산출기간	기준단가 (월)	소요금액	관련근거 (산출기준)
상근시설장	12개월	200,000	2,400,000	00센터 민간위탁금 운용계획서
합계			2,400,0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예
- 상근시설장 월 20만원
-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제외

(3) 상 여 금 : 연간 지급액이 기준단가 기본급의 400%를 초과할 수 없음

〈상여금 산출 예시〉

지급대상	지급횟수	지급율	기준단가	소요금액	관련근거 (산출기준)
2급	4	50%	3,774,000	7,548,000	00센터 민간위탁금 운용계획서
4급	4	50%	2,818,000	5,636,000	
5급	4	50%	2,563,000	5,126,000	
5급	4	50%	1,956,000	3,912,000	
합계				22,222,0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예
- 기본급의 200%, 연 4회(3, 6, 9, 12월), 지급시기마다 50%
 - 4급 산출 예 : 지급횟수 × 지급율 × 기준단가 = 4 × 50% × 2,818,000 = 5,636,000

(4) 퇴직급여충당금 :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일 경우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적용 편성

〈퇴직급여충당금 산출 예시〉

지급대상	기본급	총제수당	상여금	합계	소요금액	관련근거 (산출기준)
2급	45,288,000	5,220,050	7,548,000	58,056,050	4,838,000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8조
4급	33,816,000	5,725,950	5,636,000	45,177,950	3,764,820	
5급	30,756,000	4,932,640	5,126,000	40,814,640	3,401,220	
5급	23,472,000	3,707,250	3,912,000	31,091,250	2,590,930	
합계					14,594,970	

- 총제수당 : 연장·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 가족수당
 - 4급 산출 예 : (기본급 + 총제수당 + 상여금) ÷ 12월
 =(33,816,000 + 5,725,950 + 5,636,000) ÷ 12 = 3,764,820

(5)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

2018.9.15. 현재

명 칭	산출식	공시요율	관련기관(告示)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기본급+제수당+상여금 +급여성 임금) × 공시요율	3.12%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		4.5%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험		-신규사업 : 사업별 고시요율 -계속사업 : 납부요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0.9% ~ 1.5% (종사인원, 기업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공시요율	7.38%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24%로서 사업주와 가입자(근로자)는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사업주 적용요율 3.12%)
- 보험가입자 제외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 ①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②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③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④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보수월액의 상한과 하한(하한 30만원, 상한 9,925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보건복지부 고시)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사업주 적용요율 4.5%)
- 가입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 이상의 상시 근로자(국민연금법 제6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하한 300천원, 상한 4,680천원)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4호 2018.7.1.~2019.6.30.)

○ 산업재해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신규 사업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하고, 계속 진행사업에 대하여는 공단 납부 요율에 따라서 적용
-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

(단위: 천분율)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9. 기타의 사업	
2. 제조업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식료품제조업	20.5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5

출판·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2.5	기타의 각종사업	11.5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5	전문기술서비스업	8.5
4. 건설업	40.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교육서비스업	8.5
운수관련 서비스업	10.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5
창고업	14.5	부동산업 및 임대업	9.5
통신업	12.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1.5
6. 임업	9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10.5
8. 농업	26.5	0. 금융 및 보험업	8.5

※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자료마당에 게재

○ 고용보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음(고용보험법 제8조)

- 제외 대상(고용보험법 제10조)

①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비용은 적용)

②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③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④ 외국인 근로자(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 등은 제외), 별정우체국 직원

- 보험요율(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구분		보험요율	부담
실업급여		1.3%	사업주, 근로자 1/2 부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150인 미만기업	0.25%	사업주 전액 부담
	150인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 적용요율 : 종사자 150인 미만 0.9%(0.65+0.25), 150인 이상 1.1%(0.65+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1.3%(0.65+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1.5%(0.65+0.85)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가입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금액에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보험요율 : 건강보험액의 7.3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보험료 산출 예시〉

구분	기본급	총제수당	상여금	합계	요율 (%)	소요 금액	관련근거 (산출기준)
국민건강 보험료	133,332,000	14,785,890	22,222,000	170,339,890	3.12	5,314,600	국민건강보험 법제70조
장기요양 보험료				5,314,600	7.38	392,210	장기요양보험 법시행령 제4조
국민연금 보험료	133,332,000	14,785,890	22,222,000	170,339,890	4.5	7,665,290	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 보험료	133,332,000	14,785,890	22,222,000	170,339,890	0.8	1,362,710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4조
고용 보험료	133,332,000	14,785,890	22,222,000	170,339,890	1.3	2,214,410	고용보험법 제6조
합계						16,949,220	

- 산출금액은 보수 총액임
- 총 제수당 중 정액급식비(월10만원)는 비과세 처리
-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수탁기관 사업종류와 고용인원에 따라 요율 적용
 - 국민건강 보험료 산출 예 : 보수총액(기본급 + 총제수당 + 상여금) × 요율 = (133,332,000+14,785,890+22,222,000) × 3.12% = 5,314,600
 - 장기요양 보험료 산출 예 : 국민건강보험료 × 요율 = 5,314,600 × 7.38% = 392,210
 - 국민연금 보험료 산출 예 : 보수총액(기본급 + 총제수당 + 상여금) × 요율 = (133,332,000+14,785,890+22,222,000) × 4.5% = 7,665,290
 - 산업재해 보험료 산출 예 : 보수총액(기본급 + 총제수당 + 상여금) × 요율 = (133,332,000+14,785,890+22,222,000) × 0.8% = 1,362,710
 - 고용 보험료 산출 예 : 보수총액(기본급 + 총제수당 + 상여금) × 요율 = (133,332,000+14,785,890+22,222,000) × 1.3% = 2,214,410

나) 운영비(경비)

(1) 여 비 :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출장비용

- 국내여비 : (관내)일비, (관외)일비 + 숙박비 + 식비 + 운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5일분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정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일 단가표를 적용 (단, 사업의 특성상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 산정)
-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4시간이상은 2만원 지급, 4시간미만은 1만원 지급
- 공용차량 이용하는 경우 1만원 감액 지급(일비)
- 별도 여비규정이 의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
- 사업의 업무성격상 출장횟수와 거리 등에 따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 기준액 120,000원 초과 지급 불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내여비 산출 예시〉

출장기간	출장인원	출장횟수	기준단가	소요금액	관련근거 (산출기준)
4시간 이상	3	7	20,000	420,000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적용
4시간 미만	2	13	10,000	260,000	
합계				680,000	

- 4시간 이상 산출 예 : 출장인원×출장횟수×기준단가=4×12×20,000=960,000
- 4시간 미만 산출 예 : 출장인원×출장횟수×기준단가=4×12×10,000=480,000

〈국내여비 산출 예시〉

지급대상	출장목적	출장인원	출장횟수	기준단가	소요금액	관련근거 (산출기준)
직원	회의 여비	2	2	32,000	128,000	센터 내부 여비규정
직원	일비	2	2	20,000	80,000	
직원	식비	2	2	20,000	80,000	
합계					288,000	

- 세종시 출장 산출 예 : 여비 + 일비 + 식비
 - 여비=출장인원×출장횟수×기준단가=2×2×32,000=128,000
 - 일비=출장인원×출장횟수×기준단가=2×2×20,000=80,000
 - 식비=출장인원×출장횟수×기준단가=2×2×20,000=80,000
- 국외여비 : 항공운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준비금
- ※ 산정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운임 정액표와 일비 등의 금액표를
참고하되 실비용을 조사하여 적용
 -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민간위탁비에 계상 할 수 없음
 - 국외항공요금은 국외항공 요금 노선별·종류별·할인율표를 적용
 - 국외여행경비 중 일비, 숙박비, 식비는 자치단체 여비조례에 따라 계상
 - 출장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할 때만 여비 계상

〈국외여비 산출 예시〉

출장목적	해외 창업관련 업무 교류		
출장인원	3명	출장지역	뉴욕
출장기간	5박 6일	출장일자	5월중

목적	인원	횟수	산출식	단가	소요금액	관련근거 (산출기준)
체제비	3	1	일비\$26*6일+숙박비 실비상한액\$155*5박 +식비\$67*5박)*1,284원	1,711,570	5,134,710	공무원여비 업무처리 기준 적용
준비금	3	1	\$120*1,284원*3명	154,080	462,240	
항공료	3	1	1,600,000원*3명	1,600,000	4,800,000	
합계					10,396,950	

- 출장비 산출 예 : 일비 + 숙박비+ 식비 + 준비금 + 항공료
 - 기준일비×인원×환율=26×6×3×1,284=600,910
 - 기준숙박비×숙박일×인원×환율=155×5×3×1,284=2,985,300
 - 기준식비×출장일×인원×환율=67×3×1,284=1,548,5000
 - 준비금×인원×환율=120×3×1,254=462,240
 - 항공료×인원=1,600,000×3=4,800,000

(2) 교육훈련비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근무인력에 대한 기술보수교육과 같은 법정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교육 등에 한하여 비용 계상

〈교육훈련비 산출 예시〉

구분	내용	산출식	수량	단가	소요금액	관련근거 (산출기준)
직원법정 교육	강사료	일반2급 2시간	3	220,000	660,000	센터 운영 예산지원 계획
	강사료	연간4회/회당3시간 일반1급	4	470,000	1,880,000	센터 예산집행기준등 인재개발원 강사료지급기준
역량강화 직무교육	원고료	6면×11,000원	4	66,000	266,000	인재개발원 원고료지급기준
	교재인쇄	연간4회/회당30부 (3,500원/부)	4	105,000	420,000	견적서 참고
	다과비	25명 * 4,000원	4	100,000	400,000	세출예산집행기준 적용
합계					3,628,000	

- 직원법정교육 산출 예 : 강사비(2급 1시간+추가1시간)×횟수=(12만+10만)×3=660,000
- 역량강화 교육 산출 예 : 강사료+원고료+교재인쇄+다과비
 - 강사료=강사비(1급 1시간+추가1시간+추가1시간)×횟수=(23만+12만+12만)×4=1,880,000
 - 원고료=면수×A4기준단가×횟수=6×11,000×4=266,000
 - 교재비=부수×단가×횟수=30×3,500×4=420,000
 - 다과비=인원수×단가×횟수=30×4,000×4=400,000

(3) 임차료 :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
- 기초계산서에 임차대상·임차기간 및 장소·임차조건 등 명시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
-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
(단, 청소비 등은 실비범위 내에서 계상)
-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을 우선 이용하고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 임차 적용

〈임차료 산출 예시〉

임차대상	임차목적	횟수	규격	단가	소요금액	관련근거
복합기	사무용	12월	D420	165,000	1,980,000	계약서 견적서 산출조서
컬러프린터	사무용	12월	HP M254	33,000	396,000	
정수기	사무환경개선	12월	CHP-590N	40,130	481,560	
공기청정기	사무환경개선	12월	AP-1013F	65,000	780,000	
합계					3,637,560	

· 산출기초조사서 별도 작성

(4) 우편통신비 : 해당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된 우편료, 전화료, 인터넷 사용료

〈우편통신비 산출 예시〉

우편종류	발송목적	건수	개월	기준단가	소요금액	관련근거
일반우편	유관기관 자료발송	30	12	300	108,000	우체국 요금
등기(소포)	유관기관 자료발송	5	12	4,000	240,000	우체국 요금
전화요금	업무협의, 상담, 공지	350	12	100	300,000	월 평균 통화
인터넷사용	업무용	1	12	46,000	552,000	인터넷 계약
문자서비스	행사 공지	500	12	35	210,000	인터넷문자(장문)
합계					1,530,000	

(5)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인쇄물(경인쇄 및 옵셋인쇄) : 업체 전적가격 비교 산정
 - 각종보고서, 설문지 및 책자 :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포스터 등) : 거래실례가격(견적) 조사 산정
 - 3개월 이내 발행된 3개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 비교·판단 후 결정
 - 원가계산서의 '유인물비' 항목란에 각 홍보물별 용지종류, 사양, 부수, 수량 등 명시
- 서울특별시 친환경 간행물 발간 및 구입 기준에 의하여 산정
(서울특별시예규 제704호, 2007.7.19, 제정)
 - 간행물(책자, 팸플릿, 광고지 등)의 발행부수, 요구되는 인쇄품질, 컬러인쇄 여부 등을 고려 환경적 인쇄방식을 선택한다.
 - 간행물의 크기는 재단에 의한 자투리 종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 인쇄용지는 보존연한·용도에 따라 중질지, 백상지, 아트지 순으로 선택한다. 다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우수재활용품 품질인증(GR)마크를 받은 아트지는 백상지 또는 다른 아트지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가능한 얇은 종이를 사용한다.

〈유인물비 산출 예시〉

건명	규격	부수	수량	단가	소요금액	관련근거
보고자료	A4 80g 120p	1회	200부	6,000	1,200,000	견적서
정산서류	A4 80g 20p	2회	100부	3,500	700,000	
명함제작	아트지 90*50	2회	6명	15,000	180,000	
리플렛제작	A4 아트지180g 4도 4단접지	2회	2,000부	658,000	1,316,000	
합계					3,396,000	

· 산출기초조사서 별도 작성

(6) 소모품비 : 사업 및 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거래실례가격 적용

〈소모품비 산출 예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산출조사근거			산출가격		관련근거
				가격①	가격②	가격③	적용단가	금액	
복사용지	A4 (2,500매)	Box	8	21,000	20,100	19,450	19,450	155,600	산출 기초 조사서
프린터 토너	ML-D1630A (삼성/검정)	개	4	91,000	86,000	83,000	83,000	332,000	
합계								487,600	

· 산출기초조사서 별도 작성

- 복사용지=수량×적용단가=8×19,450=155,600

(7) 수선유지비 :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로 설비상태, 내구연한 및 교체빈도 등을 감안하여 소요비용 산출

〈수선유지비 산출 예시〉

항목	개월	단가	소요금액	관련근거
소방안전점검	1	2,000,000	2,000,000	계약서 견적서 산출조서
승강기 유지관리	12	200,000	2,400,000	
센터 무인경비	12	330,000	3,960,000	
물탱크 청소	2	900,000	1,800,000	
정화조 청소	1	350,000	350,000	
홈페이지 유지관리	12	165,000	1,980,000	
시설물 소모품비	12	100,000	1,200,000	
합계			13,690,000	

· 산출기초조사서 별도 작성

(8) 차량유지비 : 대관업무 및 시설물관리, 민원관리 등에 소요되는 차량을 유지하기 위한 연료비, 차량수리비 등을 구분하여 산정

- 연료비 계상기준 : $\text{여행거리(km)} \times \text{유가} \div \text{연비(해당차량 연비 적용)}$

·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차량유지비 산출 예시〉

항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소요금액	관련근거
모닝주유비	2,604km*1639.14/10*12개월	12월	45,000	540,000	서울주유소 평균가
스타렉스주유비	3,806km*1435.17/7*12개월	12월	82,000	984,000	서울주유소 평균가
점검 교체	검사, 오일 및 소모품 교체	4회	100,000	400,000	
소계				1,924,000	

· 모닝 주유비=월평균 주유비(2017년)×12월=45,000×12=540,000

· 스타렉스(신규차량) 주유비=월 주행거리×12월×경유단가÷연비
=400×12×1,435÷7=984,000

(9) 공공요금 및 제세 : 전기료,상·하수도료, 자동차세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소요비용

- 지난년도 집행실적을 감안 계상하며, 지정 및 고시되거나 조례 등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기준으로 요구(요금인상이 확정된 경우 인상된 금액 적용)

〈공공요금 및 제세 산출 예시〉

구분	항목	수량	단가	소요금액	관련근거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12월	120,000	1,440,000	월별 집행내역
	상하수도요금	6월	90,000	540,000	
	도시가스요금	12월	45,000	540,000	
	자동차보험	2대	920,000	1,840,000	보험료 기준
	자동차 세금	2대	150,000	300,000	세금 기준
	영업배상책임보험	1회	120,000	120,000	보험료 기준
	신원보증보험	2명	95,000	190,000	보험료 기준
	소계			4,970,000	

- 전기요금=월평균 전기요금×12개월=120,000×12=2,440,000
- 상하수도요금=월평균 상하수도요금×6개월(2개월 1회 납)=90,000×6=540,000
- 자동차보험=(모닝+스타렉스)보험료=800,000+1,040,000=1,840,000
- 신원보증보험=(팀장+직원)보험료=90,000+100,000=190,000

(10) 기타 운영비(경비) : 계약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추가 산정하여 적용
- 운영비(경비) 비목별 가격(금액) 결정

$$\text{운영비(경비)} = \text{소요(소비)량} \times \text{단위당가격}$$

※ 운영비(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 수량 산출 :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량을 산출하여야 하나, 예정물량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일정기간(3년 정도)의 결산자료(작업량, 실적자료 등)를 근거하여 예정물량 산출

〈자산취득비 산출 예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산출조사근거		단가	소요금액	관련 근거
				가격①	가격②			
전자 복사기	흑백	대	1	2,915,000	2,970,000	2,915,000	2,915,000	나라장터 (22948484)
전자 복사기	흑백/컬러 (A4,A3)	대	1	4,950,000	4,796,000	4,796,000	4,796,000	나라장터 (23076559)
데스크톱 컴퓨터	3.7GHZ	대	15	690,000	700,000	690,000	10,350,000	나라장터 (23095002)
액정 모니터	54.6cm	대	15	204,000	205,000	204,000	3,060,000	나라장터 (22844292)

빔 프로젝터	CN/EB-1930	대	5	1,170,000	1,330,000	1,170,000	5,850,000	나라장터 (22737942)
노트북	2.7ghz	대	5	790,000	800,000	790,000	3,950,000	나라장터 (23041624)
냉장고	TH/RT38K 5039WW	대	2	573,000		573,000	1,146,000	나라장터 (23005538)
전기포트	HD9320/2 2	대	5	41,250	41,650	41,250	206,250	견적산출
전자 레인지	MY/RE-C21KW	대	5	76,000		76,000	380,000	나라장터 (22509366)
정수기	HW-1003	대	2	1,060,000		1,060,000	2,120,000	나라장터 (23053411)
문서 세단기	PK-2500, 265mm	대	1	814,000		814,000	814,000	나라장터 (22878739)
TV	58UF8300	대	2	1,967,460	1,968,460	1,967,460	3,934,920	견적산출
합 계							39,522,170	

<업무 추진비 산출 예시>

항목	수량	단가	소요금액	관련근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월	350,000	4,200,000	예산편성지침
합계			4,200,000	

<회의비 산출 예시>

항목	지급인원	수량	단가	소요금액	관련근거
운영위원회	6명	4회	150,000	3,600,000	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 예산편성 지침
자문 회의	4명	2회	150,000	1,200,000	
다과비	60명	1	4,000	240,000	예산편성지침
합계					

- 운영위원회 수당=수당대상자×참석횟수×수당(2시간이상)=6×4×150,000=3,600,000
- 다과비=(운영+자문 회의 참석자)×단가=((10명×4회)+(10명×2회))×4,000=240,000

<특근매식비 산출 예시>

항목	지급인원	지급일수	수량	단가	소요금액	관련근거
특근매식비	6명	6회	12월	8,000	3,456,000	예산편성 지침
합계					3,456,000	

다) 사업비

(1) 공사, 용역, 물품구매 : 심사요청 시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각 분야별 원가계산서 작성
- 공사분야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기타 보조자료

<000 00 콘텐츠 개선공사 공사비 산출 예시>

비목		요청금액	구성비	비고
순공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18,206,100	
		간접재료비		
		작업설, 부산물(△)		
		소계	18,206,100	
	노무비	직접노무비	15,328,764	
		간접노무비	858,410	직접노무비 * 5.6%
		소계	16,187,174	
	경비	산출경비	714,899	
		산업재해보험료	655,580	노무비 * 4.05%
		고용보험료	140,828	노무비 * 0.87%
		국민 건강 보험료	478,257	직접노무비 * 3.12%
		국민 연금 보험료	689,794	직접노무비 * 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5,295	건강보험료 * 7.3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82,571	(재료비+직노) * 2.93%	
환경보전비		102,749	(재료비+직노+기계경비)*0.3%	
기타경비		1,066,191	(재료비+노무비)*3.1%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27,742	(재료비+직노+기계경비)*0.081%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23,974	(재료비+직노+기계경비)*0.07%	
소계	4,917,880			
합계		39,311,154		
일반관리비		1,100,712	계 * 2.8%	
이윤		1,332,345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6%	
아크릴 및 시트커팅 제작		4,677,000	별도 산출	
공급가액		41,740,000		
부가가치세		4,174,000	공급가액 * 10%	
도급액		45,914,000		
총공사비		45,843,000		

- 용역분야

- 과업내용서
- 방침서, 계획서 등 기타 보조자료

<000 센터 관리구역 운영 용역비 산출 예시>

구분	산출기준	보안		미화	합계		
		보안(일근)	보안(교대)				
인원	6명	1	3	2	6		
노임단가		80,496	73,688	73,688			
인건비	기본급	26일	2,092,896	5,297,721	3,831,776	11,222,393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통상임금산정 *연장근로시간*1.5	-	-	-	-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통상임금산정 시간*야간근로시간*0.5	-	906,189	-	906,189
		연차수당	통상임금/통상임금산정 시간*8*15/12	108,483	297,925	198,617	605,025
		교통비	2,600원*지급일수/인	56,342	79,092	112,684	248,118
		식대보조비	8,000원*지급일수/인	173,360	243,360	346,720	763,440
	상여금	기본급의 400%이내	174,408	441,477	319,315	935,199	
	퇴직충당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	197,982	578,609	362,476	1,139,067	
	소계		2,803,472	7,844,373	5,171,587	15,819,432	
	경비	산재보험	(기본급+제수당+상여금) *1.75%	41,576	121,508	76,120	239,204
국민연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 *4.5%	106,910	312,449	195,737	615,096	
건강보험		(기본급+제수당+상여금) *3.12%	74,125	216,631	135,711	426,467	
노인장기 요양보험		건강보험료*7.38%	5,470	15,987	10,015	31,473	
고용보험(임금채권 보장보험포함)		(기본급+제수당+ 상여금)*0.96%	22,808	66,656	41,757	131,221	
소계		250,889	733,231	459,340	1,443,461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3.5%	106,903	300,216	197,082	604,201		
이윤	(인건비+경비+ 일반관리비)*5%	158,063	443,891	291,400	893,355		
총용역원가		3,319,327	9,321,711	6,119,410	18,760,449		
부가가치세	(총용역원가)*10%	331,933	932,171	611,941	1,876,045		
총용역비(월)	총용역원가+부가가치세	3,651,259	10,253,883	6,731,351	20,636,493		
총용역비(년)	총용역비(월)*12월	43,815,114	123,046,592	80,776,215	247,637,920		

<000 센터 전시기획 운영 용역비 산출 예시>

구분	항목	규격(내역)	산출기초			소요금액	첨부서류
스튜디오 쇼케이스	기획 및 관리	책임연구원	3,169,323	X	1월	3,169,323	인건비 기준단가
	공간디자인 및 실시설계	연구원	2,430,194	X	1월	2,430,194	
	그래 디자인 및 실시설계	연구원	2,430,194	X	1월	2,430,194	
	영상 디자인 기획 및 편집	연구원	2,430,194	X	1월	2,430,194	
	콘텐츠구성	책임연구원	3,169,323	X	1월	3,169,323	견적서
	구조공사	1식	10,960,000	X	1식	10,960,000	
	사인공사	1식	3,430,000	X	1식	3,430,000	
	전기공사	1식	2,285,000	X	1식	2,285,000	인건비 기준단가
	기획 및 디자인	연구원	2,430,194	X	1월	2,430,194	
	홍보물 제작	포스터, 리플렛 5000부	2,091,500	X	1식	2,091,500	견적서
	기자재 임차 및 설치	모니터	2,744,000	X	1식	2,744,000	
	소 계					37,569,922	
	개관기념 특별전	기획 및 관리	책임연구원	3,169,323	X	2월	6,338,646
공간 디자인 및 실시설계		연구원	2,430,194	X	1월	2,430,194	
		연구보조원	1,624,503	X	1월	1,624,503	
그래픽 디자인 및 실시설계		연구원	2,430,194	X	1월	2,430,194	
		연구보조원	1,624,503	X	1월	1,624,503	
영상 디자인 기획 및 편집		연구원	2,430,194	X	1월	2,430,194	
콘텐츠구성		책임연구원	3,169,323	X	1월	3,169,323	"
전시품 운송비		3개소 (국내, 왕복, 포장)	1,199,994	X	3회	3,599,982	견적서
구조공사		1식	36,440,000	X	1식	36,440,000	
사인공사		1식	5,435,000	X	1식	5,435,000	
전기공사		1식	4,085,100	X	1식	4,085,100	인건비 기준단가
기획 및 디자인		연구원	2,430,194	X	1월	2,430,194	
홍보물 제작		포스터, 리플렛 1종, 5000부	2,091,500	X	1식	2,091,500	견적서
기자재 임차 및 설치		모니터, 프로젝터, PC	5,464,000	X	1식	5,464,000	
소계					79,593,333		
합계					117,163,255		
기업이윤	6%				7,029,795		
계					124,193,050		
부가가치세	10%				12,419,305		
사업 총계					136,600,000		

- 물품구매

- 산출기초조사서(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 구매 계획서, 규격서, 사양서 등

<녹지관리 재료비 구매 산출 예시>

구분	산출내역		기준단가	소요금액	관련근거	
	산출식	수량				
녹지관리	인조벚집 구매	서울숲 내 초가지붕 5개소*1회시공	5개	3,280,000	16,400,000	계획서 및 산출기초 조사서
	녹지관리 소모자재구입	전지가위, 보안경, 동절기 식물보온자재 등 39종	4회	2,007,500	8,030,000	
	시설관리 소모자재구입	에나멜페인트, PE관, 양변기부속,벨브, 핸들, 마사토,등	12월	3,283,000	39,396,000	
	환경관리 소모자재구입	쓰레기 수거용품,청소용품	12월	2,043,250	24,519,000	
	체육사 소모자재구입	소금, 마사토, 기동보호대, 테니스장 브러쉬, 테니스네트, 백회, 배드민턴, 족구네트, 농구그물	12월	518,800	6,225,600	
	곤충식물원 유지관리자재	곤충식물원유지관리사업 (3개사업)	12월	1,916,600	22,999,200	
	유지관리자재구매	나비먹이재배장 유지관리사업(1개사업)	12월	1,583,330	18,999,960	
	동물방역및방제 자재	방역용소독약(액)200L 방역용소독약(분말)150kg 방역복200set	12월	485,200	5,822,400	
	동물사료 및 유지관리 자재	사슴먹이, 자판기용 먹이, 티모시, 알팔파, 카우브러쉬	12월	3,130,200	37,562,400	
	퇴비장 조성 재료	벽돌, 목재, 퇴비화 재료, 레이탈 등	1회	5,470,600	5,470,600	
계				185,425,600		

(2) 그 외 프로그램, 교육, 행사 등 : 사업마다 특성이 다양하므로 해당 사업에
맞게 세부 항목별 단위당 가격 산정

- 프로그램 산정 예시(사업비 기초계산서)

<행사운영비 산출 예시>

구분	산출내역		기준단가	소요금액	관련근거 (산출기준)
	산출식	수량			
캠페인	나의서울숲 사진전시회	1회	5,000,000	5,000,000	산출서, 견적서 첨부
	책읽는서울숲 재료비	3회	3,000,000	9,000,000	산출서, 견적서 첨부
	야외책꽂이 제작	10개	500,000	5,000,000	산출서, 견적서 첨부
	책읽는서울숲 강사비	7회	500,000	3,500,000	산출서, 견적서 첨부

	야외책꽂이 제작	10개	500,000	5,000,000	산출서, 견적서 첨부
	책읽는서울숲 강사비	7회	500,000	3,500,000	산출서, 견적서 첨부
문화 이벤트	홍보비	4회	1,306,250	5,225,000	견적서첨부 -배너/리플렛,포스터
	재료비	4회	3,127,500	12,510,000	견적서첨부 -가랜드/야광팔찌/사진액자
	섭외비	4회	7,821,250	31,285,000	견적서첨부 -공연/무대/음향/조명/증게
계				71,520,000	

<기타 사업비 산출 예시>

명칭	산출내역		단가	소요금액	관련근거 (산출기준)	
	산출식	수량				
세미나 운영	강사료	1회 운영: 220천원(2시간, 일반2급, 컨설턴트)	10회	220,000	2,200,000	예산편성 잠정기준
	임대료	임대료 400천원(1일당)	5회	400,000	2,000,000	비교견적서
전문상담원 운영	전문상담료(2시간),1개월 2회	24회	100,000	2,400,000	상담서비스 운영계획	
자원봉사자 운영	1일 4시간기준, 15회(1개월)*12개월	180회	8,000	1,440,000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시행규칙	
홍보물 제작	리플렛	아트지180g, A4, 3단 접지, 칼라인쇄	2,000부	545,000	545,000	견적서 첨부
	칼라볼펜	3색 칼라볼펜 2,000개 제작	2,000개	500	1,000,000	
	포스터제작	4절(367*517), 디자인비포함, 500부	500부	338,000	338,000	

4) 단위당 가격 조사 참고자료

자 료 항 목	인터넷주소	자 료 출 처
1. 건설업 임금실태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2.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www.kenca.or.kr)	HOME > 공지사항
3. 제조업 임금 단가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	HOME > 정보마당 > 제조노임단가
4. 학술연구용역인건비	행정안전부 (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5. SW기술자 임금실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www.sw.or.kr)	사업지원 > 사업대가, 기술자평균임금
6. 감리원 임금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www.ekacem.or.kr)	협회소식 > 공지사항
7. 소비자 물가동향	통계청 (www.kostat.go.kr)	통계정보 > e-나라지표 > 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도 기준단가에 통계청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출한 단가
8. 환율	keb하나은행 (www.kebhana.com)	외환 > 환율 > 고시환율 ※ 고시회차 : 최초환율
9. 유류가격 (휘발유·경유·중유·LPG)	한국석유공사 (www.opinet.co.kr)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 국내유가 ※ 지역별(서울) 판매가격
10. 소모품비(자재비)	· 조달청 가격정보 (www.g2b.go.kr)	조달청 > 나라장터 > 가격정보
	· 전문가격 조사기관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11. 상하수도요금	상수도사업본부 (arisu.seoul.go.kr)	사이버고객센터 > 요금조회
12.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home.kepco.co.kr)	고객센터 > 사이버지점 > 조회·납부
13. 가스·우편·전화·철도· 버스·기타 운송요금	한국물가정보 (www.kpi.or.kr)	물가정보 > 공공요금
	한국물가협회 (www.kprc.or.kr)	적산자료 > 참고자료